

# 교내 안전관리 규정

- ☐ 제정 : 2006. 3. 1.
- ☐ 개정 : 2011. 6. 30.
- ☐ 개정 : 2018. 3. 1.
- ☐ 개정 : 2018. 8. 31.
- ☐ 개정 : 2019. 6. 18.
- ☐ 개정 : 2023. 6. 1.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내 안전관리에 관한 안전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재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적절한 수업(실험·실습)또는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직원과 학생의 안전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해”라 함은 학생 또는 교직원의 수업(실험·실습)또는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실험·실습장비, 가스 등에 의하거나 수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는 것을 말함
2. “학생”이라 함은 본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함
3. “교직원”이라 함은 학교법인 고운학원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 직원, 조교와 기타 학교가 필요에 의하여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잡급 또는 인부를 말함
4. “수업 또는 작업환경 측정 등”이라 함은 수업 또는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사 시설, 실험·실습장, 작업장 등에 대하여 총장 또는 총장이 지정하는 자가 측정계획을 수립하여 분석 평가하는 것을 말함
5. “안전·보건진단”이라 함은 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 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이 규정에서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함.
6. “중대재해”라 함은 안전재해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이 규정에서 정하는 재해를 말함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교 내의 교육용시설, 실험·실습실(장), 작업장, 기타 건설 중인 시설물에 적용 한다.

**제4조(학교의 책무)** ① 학교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 4-2-28 교내 안전관리 규정

1. 안전재해 예방대책의 수립 및 통제에 관한 사항
2. 재해 다발 시설물에 대한 재해예방의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에 관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안전성 확보와 개선에 관한 사항
4.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의 작성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 교육 및 무재해 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6. 안전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험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② 총장은 전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 및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직원 또는 학생의 의무)** 교직원 또는 학생은 이 규정과 이 규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교내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학교 또는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안전 및 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대책위원회)** ① 제4조 제1항에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 보건에 관한 대책 등 주요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본 대학에 안전관리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총무팀장, 교무팀장, 교학처장, 학생입학처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교직원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관리과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 한다.

**제7조(규정요지의 게시)** 학교는 이 규정과 이 규정에 의한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실험·실습실 또는 시설물의 위해·위험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학생 및 교직원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표지의 부착 등)** 학교는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안내, 기타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표시 등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제 2 장 안전관리 체계

**제9조(안전관리업무의 범위)** 안전관리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내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계획의 수립·집행 및 통제에 관한 사항

2. 학생 또는 교직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수업 또는 작업환경측정 등의 측정과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안전사고 및 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5. 안전사고 및 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6. 안전진단과 진단결과 조치사항의 이행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안전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규정에 의한 교직원 및 학생의 안전에 관한 사항

**제10조(안전관리책임자)** ① 전조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관부서에서 지정한 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둔다.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담당자를 관리·감독하고, 제9조의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지휘·감독 한다.

**제11조(안전관리담당자)** ① 총장은 각 건물 또는 각종 시설물별로 교원, 직원 또는 조교 중에서 안전관리담당자를 임명 한다.

② 안전관리담당자는 담당구역의 시설 또는 작업환경 등에 수시 점검하며,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 3 장 유해·위험예방 조치

**제12조(안전상의 조치)**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각종 시설물에서 수업(실험·실습) 또는 작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기타 실험·실습 장비에 의한 위험
2. 건설 중인 시설물에 의한 위험
3. 주·야간 학생 수업에 따른 위험
4.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5.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6.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건강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화학 또는 유해물질에 의한 위험
7. 교직원의 업무수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전기, 설비, 관리, 영림 및 기타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작업 중 교직원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낙하·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수행 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2-28 교내 안전관리 규정

- ④ 안전관리책임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상의 조치사항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독려하여야 한다.
- ⑤ 안전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예산상의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총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⑥ 총장은 전항에 의한 예산상의 지원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이를 수용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제13조(보건상의 조치)**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산소결핍공기,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2.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또는 잔재물 등에 의한 건강장해
  - 4.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조작, 정밀공작 등에 의한 건강장해
  - 5.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및 청결 등에 대한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 6. 농약 또는 화공약품 등의 살포에 의한 건강장해
-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예산상의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총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③ 총장은 전항에 의한 예산상의 지원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이를 수용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제14조(건강진단)** ① 총장은 정기적으로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건강진단은 특별히 재해의 의심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대치한다.
- ③ 총장은 교직원에 대해 건강진단(채용시의 건강진단 제외)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교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총장은 건강진단결과 교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총장은 본인의 동의 없이 개별 교직원의 건강진단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건강진단의 회수, 검사항목, 검진비용, 건강진단의료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을 준용한다.

**제15조(안전교육 등)**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수업(실험·실습) 또는 작업을 행함에 있어 당해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수업(실험·실습) 또는 작업개시 전에 안전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안전교육(또

는 수칙) 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담당자는 수업(실험·실습) 또는 작업을 행함에 있어 당해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전항에 의한 안전교육의 실시 또는 규칙의 주지 여부와 안전점검 실시 여부를 점검일지에 기록·보존시켜야 한다.

**제16조(수업 또는 작업환경 측정 등)**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건물, 각종 시설물 또는 실험·실습장 등에 대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 측정방법, 횟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이 정 한다.

③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당해 교직원 및 학생에게 알려야 하며, 교직원 또는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보수, 수리,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진단 등)**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각 건물 및 시설물 또는 실험·실습장에 대하여 안전 진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은 정기진단과 수시진단으로 구분하며, 정기진단은 연2회, 수시진단은 필요시마다 실시하되 진단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정한다.

③ 시설물의 안전상태의 정도에 따라 전문 안전진단업체에 용역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총장은 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 당해 시설 및 설비의 보수, 수리,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수업 또는 작업중지 등)** ① 총장은 안전점검(진단) 결과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안전 사고 또는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업 또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지대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 및 학생은 안전사고 또는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안전관리담당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안전사고 또는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때에는 수업 또는 작업을 즉시 중지시켜야 하며,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안전사고 또는 재해발생 원인이 교직원의 고의, 과실, 부주의 또는 태만 등이 아닌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관련 교직원에 대하여 인사상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보호구의 착용 등)**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수업 또는 작업도중 필요시 안전화 및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그 이행 여부를 안전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점검·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착용상 예산상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이를

4-2-28 교내 안전관리 규정

총장에게 요구하여야 하며, 총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이를 수용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제20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용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정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